


조례안 자구정리

- 제32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(23. 9. 4.)에서 수정가결된 『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구 정리하고자 함.

원 안	자구 정리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“<u>사회적 고립청년</u>”(이하 “<u>고립청년</u>”이라 한다)이란 사회적·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,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으로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“<u>사회적 고립청년</u>”(이하 “<u>고립청년</u>”이라 한다)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<u>서초구청장</u>(이하 “<u>구청장</u>”이라 한다)은 고립청년의 복지향상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<u>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</u>----- ----- -----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<u>법령</u> 또는 <u>다른 조례</u>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.</p>	<p>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----- ----- <u>다른</u> ----- -----</p>

원 안	자구 정리
<p>제6조(고립청년 발굴) ① 고립청년 발굴의 주체는 <u>서울특별시 서초구</u> 소속 공무원,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6조(고립청년 발굴) ① ----- ----- 구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지원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) ① 구청장은 청년 지원 관련 기관 등을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으로 지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<u>범위 안에서</u>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0조(지원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범위에서</u>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<u>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</u>」를 따른다.</p>	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「<u>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</u>」에 -----.</p>
<p>제11조(관련기관·단체와의 협력 등) 구청장은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, <u>필요할</u>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 할 수 있다.</p>	<p>제11조(관련기관·단체와의 협력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필요한</u> ----- -----.</p>

			행정복지위원장
담당자	전문위원	사무국장	
이상민	김성리	조성락	